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가. 부생연료유평매소 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 부과(안 별표)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 석유제품으로 “부생연료유평매업”을 신설하였고, 이에 석유사업법 제31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생연료유평매소 등록시 20,000원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수수료 산정기준은 원가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00원은 원가의 82% 수준이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시 수수료는 현행 3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부생연료유 : 원유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사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때 남사정제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주로 산업용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용제 : 원유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페인트 등을 녹이는 용액으로 신나류 등을 말함.

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에 따라 수수료감면대상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임(안 제6조제2호).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87
----------	-----

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0.10.20)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함(안 제7조).

○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안 제22조).

-현행 : 매각대금 5년 이내, 이자 연8% 분할납부

-개정 :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 연5% 분할납부

○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분을 산출하도록 함(안 제25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함
(안 제2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분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p>○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p> <p>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안 제5조)</p> <p>○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도·신탁 또는 대물변제 할 수 없으나 그 용도 또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p> <p>○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p> <p>○ 동법시행령 제84조의2에서 “관리위탁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p> <p>○ 동법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 이와 같은 근거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 또는 전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p> <p>나. 공유재산심의회(안 제7조)</p> <p>○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대상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포함하고자 함.</p> <p>이는 동법시행령 제78조(공유재산의 종류)가 “공용재산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을 추가하도록 개정되므로 해서 관련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p> <p>○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상암월드컵전용구장</p>	<p>인 경우 현재 건설 중이므로 기존 법령에 의하면 준공이 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위탁관리 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공전에도 위탁계약이 가능하므로 위탁받은 자가 미리 위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p> <p>다. 관리 및 처분(안 제11조)</p> <p>○ 현행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7조제11항으로 이관하고 기타 관련법령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p> <p>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안 제20조의2)</p> <p>○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된 사항을 법 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것임.</p> <p>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안 제22조)</p> <p>○ 현행조례에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한 경우 분할납부조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한의 도래로 삭제하는 것임.</p> <p>○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제2항에서 “잠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3%~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하고, 현행조례 1, 2, 3, 4호가 시행령 100조와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임.</p> <p>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안 제23조)</p> <p>○ 현행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평가가격의 50/100으로 규정한 것을 50/100 이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재산은 현행 25/1000에서 25/1000 이상으로, 주한외국공관용 재산은 현행 40/1000에서 40/1000 이상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시행령 제92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평가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안에서 탄력적으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p> <p>사. 대부료에 관한 특례(안 제23조의2)</p>
--	--

- 현행조례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경쟁입찰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5에서 조례와 다르게 개정(2000.10.20)함으로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아.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안 제25조의2)
- 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전세대상재산, 전세금납부방법, 전세금액, 전세금관리, 전세금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자. 변상금의 청문 등(안 제28조의2)
-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징수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문제도를 둠으로써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변상금청문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6
----------	-----

2001년 6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경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 가. 제안이유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관련

-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합의제기관의 장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항제4호).
 -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특수공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함(안 제3조의2).
 - 공인 인영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모사전송기 문서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공인은 시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에게 등록하고,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 가. 합의제기관의 장도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합의제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특수공인(안 제3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
 - 다. 공인의 등록(안 제8조) 기존에는 공인을 교부하였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교부하는 제도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인은 등록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안 제10조) 전자결재가 일반화됨으로써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는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한 것임.
 - 마. 공인의 공고(안 제11조)